

■ 수산업법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26. 6. 23.>

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(제14조제2항 관련)

어업의 종류	대상 지역	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
마을 어업	전남광주통합특별시, 부산광역시, 인천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기도, 충 청남도, 전북특별자치도, 경상남도	마을어장 형망선, 형망어업 또 는 잠수기어업이 허가된 어선
	강원특별자치도, 경상북도, 제주특 별자치도	마을어장 형망선, 자원관리채취 선, 형망어업 또는 잠수기어업 이 허가된 어선

비고

1. “마을어장 형망선”이란 형망을 이용하는 동력어선을 말한다.
2. “자원관리채취선”이란 잠수기를 이용하는 어선을 말한다.